

충남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시행 세칙

[제정 2013. 2.22.]

1차 개정 2017. 2. 13.

2차 개정 2017. 9. 08.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한다) 제7장 학위청구논문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철학과(이하 “학과”라고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석사, 박사 그리고 석·박사통합과정 수료학점의 3분의 2이상을 취득하여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려는 자(외국인 포함)에게 적용한다.

제3조(논문제출자격)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 제41조에서 정한 논문제출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4조(논문제출자격시험) 논문제출자격시험에 대한 응시절차 및 자격요건, 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2. 13.)

- ①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은 매 학기 1회 실시한다.
- ② 자격시험 응시자는 수강한 과목 중에서 자신의 전공에 해당하는 시험과목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석사학위과정은 3과목 이상, 박사학위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은 4과목 이상으로 한다.
- ④ (삭제 2017. 2.13.)

제5조(응시절차) 학위청구논문의 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와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정해진 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13.)

제6조(출제위원 및 채점위원) ① 출제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임교수 중에서 2인 이상을 학과장이 위촉한다.
② 채점위원은 원칙적으로 출제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과장 승인 하에 따로 채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7조(합격기준) ① 전공시험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② 불합격된 시험에 대하여는 다시 응시할 수 있다.

제8조(외국어능력 기준) ① 석사 및 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 자격을 위한 외국어능력

기준을 “별표 1”과 같이 정하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영어능력시험, 어학원, 기타 언어 중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2. 13.)

② (삭제 2017. 2. 13.)

③ 외국인 학생의 경우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을 취득하거나 “별표1”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신설 2017. 2.13.)

④ “별표1”에서의 언어를 사용하는 해외 대학에서 하위과정의 학위를 취득한 내국인 학생은 그 언어에 대한 외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외국어능력기준을 면제한다. (신설 2017. 2.13.)

제9조(논문 계획 및 예비 발표) 논문 계획 및 예비발표를 하지 않는다.

제10조(학술지 게재 의무조건) 박사학위과정의 경우 연구재단 등재 혹은 등재후보 국내 학술지에 1편 이상 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11조(논문지도위원회) 대학원학사운영규정 제40조 2에 따라 논문지도위원회를 둔다.

제12조(논문심사위원회) 논문심사위원회는 대학원학사운영규정 제45조에 따르며,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는 내부 심사위원 3인과 외부 심사위원 2인을 두고, 외부 심사위원에 대한 위촉은 지도교수와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이루어진다. (개정 2017. 2.13.)

제13조(시행세칙의 개정) 시행세칙의 개정이 필요한 때에는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시행세칙은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7. 2. 13.)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어능력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6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종전 시행세칙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2017. 9. 8.)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어능력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종전 시행세칙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1] (개정 2017. 9. 8.)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외국어 능력 기준(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영어 능력 시험					어학원			기타 언어			
토익 (TOEIC)	토플 (TOFEL)		텡스 (TEPS)	아이엘츠 (IELTS)	국제 언어교육원 (영어, 중국어, 일본어, 불어)	공자 학원	독일 문화원	중국어	일본어	불어	독일어
	CBT	IBT									
595 이상	177 이상	62 이상	500 이상	5.0 이상	60시간 이상			HSK 3급	JLPT 3급	DELFB1 이상	Goethe-Zertifikat B1 이상